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 집)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 집)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 집)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 제출일자: 2024. 9. 12.(목)
- 회부일자: 2024. 9. 12.(목)
- 검토기간: 2024. 9. 12.(목) ~ 2024. 9. 20.(금)

2.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운영 중인 달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운영방식	위탁기간	위탁기관
달서구 청소년문화의집	조암로 129 (대천동)	3층(621.84㎡) 4층(466.83㎡) 5층(453.14㎡) 총(1,541.81㎡)	대강당, 동아리실, 영상제작실 등	민간 위탁	2022.6.1. ~2024.12.31 (2년 7개월)	구미 대학교

※ 위탁예산 : 4억 1,000만원 정도(2024년 기준)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 관리
 - 청소년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 전반
 - 기타 달서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4.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운영 및 위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5. 검토의견

-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이 만료(2024년 12월 31일자)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달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상 3층에서 5층까지 연면적 1,531.81㎡로 대강당, 동아리실, 영상제작실, 음악·댄스실, 강의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관장 1명과 팀장 2명 등을 포함해 8명의 운영 인력을 두고, 2023년 기준 약 81,342명(1일 232명)이 이용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폴리마켓, 가족챌린지 등의 마을축제 및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96.5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결과 또한 위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더불어 위탁업체 선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는 등 사무의 위탁절차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